

3. 山林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山林廳公告 第199609號 1996. 11. 21

주 요 골 자

- 가. 산업단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.
- 나. 산림전용부담금 면제대상자에 택지개발사업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100분의 700이상 편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함.

개 정 이 유

“경쟁력 10% 이상 높이기”추진방안과 2000년대 쌀자급기반유지를 위하여 우량농지보전, 산지이용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“쌀산업발전종합대책”的 추진을 위하여 산림전용부담금면제대상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주택회보